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6 . 1 5 . (목)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5
제출일자 : 2023. 5. 31.
회부일자 : 2023. 6.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노성환 의원 외 14명

2. 제안 이유

- 농업 현장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하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제도적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임.
- 남거나 오래된 농약이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인근 농경지 주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수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체계화 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보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불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불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환경정책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10일
- 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폐농약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서 특히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바¹⁾,

-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 시·도의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2020.4.1.) 경상남도(2021.11.4.), 전라남도(2023.4.27.) 등 3개 도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약”, “폐농약”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²⁾,
- 안 제3조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4조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시·군과 폐농약 수거함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는 폐농약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 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1) 환경부 고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2022.2.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처리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폐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

2)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자목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함.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협, 농약취급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농약사용자의 안전과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의견

-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의 제도적 처리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경북도는 2017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폐농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하고 적절한 처리방법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별 폐농약 수거·처리 체계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여, 폐농약의 실효성 있는 수거·처리 및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위 : kg, 개)

시군명	예상발생량 (kg/년)	수거		보관장소	처리
		수거장소	수거합수		
계	10,692	-	265	-	-
포항시	440	읍면동	28	매립장	민간위탁
경주시	1,000	읍면동	23	매립장	민간위탁
김천시	440	읍면동	22	선별장	민간위탁
안동시	-	읍면동	16	매립장	민간위탁
구미시	1,720	읍면동	27	읍면동	민간위탁
영주시	880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영천시	500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상주시	640	읍면동	24	읍면동	민간위탁
문경시	-	읍면동	23년 설치	읍면동	민간위탁
경산시	-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군위군	450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의성군	830	보건소	105	매립장	민간위탁
청송군	400	읍면동	8	매립장	민간위탁
영양군	286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영덕군	-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청도군	486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고령군	-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성주군	510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칠곡군	1,400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예천군	340	읍면동	12	읍면동	민간위탁
봉화군	-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울진군	370	읍면동	23년 설치	매립장	민간위탁
울릉군	-	해당없음			